

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기업인 프론티어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신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 당면과제 해결을 지원함.

나.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소·부·장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킹이 요구되는 바,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18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- 2) 필요성 : 기술혁신 기업 선정, 사업 관리, 컨설팅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각종 기업지원사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세부계획 수립,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, 대상기업 선정
- 2) 선정평가, 기업 간담회 실시, 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 전반
- 3) 기업 만족도 및 사업성과 조사, 후속 지원 연계 등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7. 2월 ~ 12월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9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사업비	간접비	인건비	비고
900	630	90	18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‘26. 8. 18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-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력 등 자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(3)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18조
- (4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※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

라.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, 감사 결과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,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(단, 구체적 사항은 「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)
2.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
3. 이차보전, 특례보증,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

4.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
5.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
6. 스마트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
7. 교육·인력양성 및 컨설팅
8. 지역특화산업 육성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생략

제1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 프론티어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위탁 시 사업
운영으로 인한 재정 소요가 예상됨
2. 비용추계의 전제 (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름)
 - 가. 사업비는 연간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함
 - 나. 인건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인원 및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여
산정함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○ 사업비	630	630	630	630	630	3,150
	○ 간접비	90	90	90	90	90	450
	○ 인건비	180	180	180	180	180	900
	계	900	900	900	900	900	4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국 비						
	도 비						
	시 비	900	900	900	900	900	4,500
	민 간						
	기 타						
	합 계	900	900	900	900	900	4,500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이규상(480-613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900,000	
사 업 비	630,000	· 프로그램지원비(핀포인트 지원) 228,000천 원 - 평균 5,000천원 내외 × 45건 · 프로그램지원비(성장테마 지원) 360,000천 원 - 평균 30,000천원 내외 × 12건 · 전문가 활용비 300천 원×9명×5회=13,500천 원 · 회계감사비 4,500천 원×1회= 4,500천 원 · 여비 20천 원×25회=500천 원 · 사무용품비 320천 원×5회= 1,600천 원 · 회의비 300천 원×13회=3,900천 원 · 연구수당 18,000천 원
간 접 비	90,000	· 기관 공통경비 90,000천 원
인 건 비	180,000	· 참여직원 인건비 180,000천 원 - 참여인력(수석급) 1명×11개월×40% 참여율 46,000천 원 - 참여인력(책임급) 2명×11개월×34% 참여율 60,000천 원 - 참여인력(선임급) 3명×11개월×32% 참여율 59,700천 원 - 참여인력(원 급) 1명×11개월×40% 참여율 14,300천 원

성과보고서

1. 사업기간 : 2026. 2.~12.

2. 사업비 : 900백만원

3. 사업내용

- 기업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2-Track 지원 제공(매출 50억 미만 기업 우대)

4. 추진실적(2026년)

- 펀포인트지원 : 230백만원, 50건 지원(여성기업 9건 포함)
 - 생산 고도화, 시제품 제작, 인증·특허지원, 전시회지원, 마케팅지원 등
- 성장테마지원 : 360백만원, 12건 지원
 - 기술 혁신, 마케팅 주도, 수출 중점 성장 테마

성과평가 결과서

1.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26. 8. 6.(목)
- 대 상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
- 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대상기간 : 2026. 2. 1. ~ 평가일
- 평가내용 :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 업무 전반
- 평 가 자 : 2명(기업지원팀장 및 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
- 평가항목 : 2개 분야 7개 항목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○ 평가결과

총 점 (100)	공동분야(40)				개별분야(60)		
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대상자관 리 (20)	사업홍보 (20)	성과 및 만족도 제고 (20)
98	10	10	10	10	20	20	18

○ 총 평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년간의 기업지원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정보와 지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, 관련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
- 여성 기업 지원 등 시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책임성 있는 사업 운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

공공위탁사무 자체감사 결과

○ 위탁사무 개요

위탁기관 (부서)	위탁사업명	수탁기관명	위탁예산 (백만원)	위탁기간	비고
기업지원과	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	(재)구미전자 정보기술원	900	2026. 2.~12.	

○ 감사개요

- 기 간 : 2026. 8. 6.(목)
- 감사범위 : 위탁업무 전반
- 감 사 반 : 2명(기업지원팀장, 담당자)

○ 감사방법 : 실지감사

○ 감사결과 및 처분사항 : 적정

○ 기타사항 :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공 민 정
	담 당 자	이 규 상 (480-6134)